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므로

법무부는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시 ‘활동범위 제한통지서’를 교부하여 격리대상 외국인이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한편,

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강제퇴거명령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고 있으나, 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제1회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50만원으로 법 위반의 예방적 효과가 미약한바 범칙금을 상향하여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법무부령 제 호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 제2호 범칙금 부과 대상자 커목의 법 제94조 제14호의 1회의 범칙금액란 “5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범칙금 부과대상자 커목의 법 제94조 제14호의 2회의 범칙금액란 “200만원”을 “5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범칙금 부과대상자 커목의 법 제94조 제14호의 3회의 범칙금액란 “500만원”을 “1,0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범칙금 부과대상자 커목의 법 제94조 제14호의 4회의 범칙금액란 “1,000만원”을 “1,5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